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규정

제정 2003. 3. 8. 제392호 개정 2003. 5.12. 제393호 2010. 3. 5. 제5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상·벌, 장학,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 학생증발급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지원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위 원 회

제3조(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 ①학생활동의 지도육성과 학생상벌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학생과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훈련과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학생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 한다.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조(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회 각종 조직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5.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6. 특별포상에 관한 사항
- 7.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제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8. 상벌 및 장학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 9.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 10. 장학생 선발 등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상 벌

제5조(상벌절차) 학생의 상벌을 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6조(상벌의 기록) 상벌은 상벌대장 및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는 학생과장의 요청에 따라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중상벌 금지) 상벌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벌에 대한 의견 청취) 상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상벌통보) ①징계를 위한 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과장은 확정된 포상 및 징계처분을 각 과(소·원)장 및 전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내에 공고한다.

제1절 포 상

제10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우등포상 : 당해 학년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는 우등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2. 졸업포상 : 졸업을 하는 자로서 재학기간중 타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우수졸업생으로 추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종 류	수 상 대 상 (기 준)
최우수상	졸업석차 1위인 자
경기력상	①올림픽대회 입상자
	②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③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④U대회, 동아시아대회 입상자
	⑤기타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
공로상(총장 표창장)	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우등상(총장 표창장)	평균 평점 3.8이상인 자

3. 특별포상 : 재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모범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

종 류	수 상 대 상 (기 준)
모범체육상(총장 표창장)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평소 체육지도자로서 소양이 뚜렷한 자
기타 모범상(총장 표창장)	학교발전 및 명예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입학포상 : 최우수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추천) 포상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추천기한	구비서류	추 천 자
우등포상	우등포상	매년 1월	별지1호서식의 추천서	학부(과)장
졸업포상	최우수상	"	"	"
	경기력상	"	별지2호서식의 추천서	훈련과장
	공 로 상	"	별지1호서식의 추천서	학생과장
	우 등 상	"	"	학부(과)장
특별포상	모범체육상	수 시	"	훈련과장, 학부(과)장
	기타모범상	"	"	학부(과)장
입학포상	입학포상	입학식일자 10일전까지	n	"

제12조(경기력 포상자의 선정기준) ①훈련계획에 의한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②대회에 출전하여 다음 각호의 성적을 낸 자

- 1. 올림픽 입상자
- 2.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 3.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 4. U대회, 동아시아대회 입상자
- 5. 기타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2절 징 계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등) ①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근신은 3일 이상 7일 미만으로 한다. 단,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중 지도교수와 학생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된다.
- ④재학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다만, 가중처벌의 징계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징계요청 및 구비서류) ①징계의 요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 ②징계 요청 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건 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 1부.
- 3. 기타 참고서류
- ③각 학부(과)장은 징계사유가 발생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관 수칙 위반자는 생활 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
- ④학생지도위원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무기정학의 해제) 학생과장은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의견을 들어 소정의 절차에 의거 무기정학을 해제한다.

제16조(징계사유 및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에 처한다.

항벌	징 계 사 유	최초징계범위
1	생활관 제반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근신이상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
3	본 대학이 설정한 대회출전규정 제12조에 관련된 자	"
4	본 대학이 설정한 체력기준에 지극히 미달한 자	"
5	부정시험자로 조작, 제공하다가 적발된 자	유기정학 이상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무기정학 이상
7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8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
9	흡연을 하였거나 본 대학에 허가 없이 음주한 자	"
10	허가 없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주동한 자	유기정학 이상
11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자	근신이상
12	폭력을 행사한 자	유기정학 이상
13	성희롱을 한 자	유기정학 이상
1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근신이상

제17조(봉사명령) ①제1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봉사명령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무기정학 이상 해당자 : 30일 이상
- 2. 유기정학 이상 해당자 : 20일 이상
- 3. 근신 이상 해당자 : 10일 이상

제18조(징계대상자 퇴학제한) 제1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격제한 및 수혜금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각종 간부직책 및 장학금 등기타수혜 혜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내 장학금
 - 가. 학비감면 장학금
 - · A급장학생 : 등록금 전액면제(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 B급장학금 : 등록금 일부면제(기성회비)
 - · C급장학금 : 등록금 일부면제(입학금+수업료 면제)
 - 나. 기성회 장학금
 - 다. 적립 장학금
 - 라. 재해 장학금(비ㆍ태풍 등 전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지급)
 - 마.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진흥장학재단 장학금
- 2. 한국학술진흥장학재단 장학금
- 3. 국가보훈 장학금
- 4. 교외(단체, 개인 등) 장학금
- 5. 금융기관 학자금 융자

제21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학력(성적, 경기력)이 우수한 자
- 2.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3. 지급하는 자(기관, 단체 등)가 수혜요건을 특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자
- 4. 교내활동(근로, 자치활동, 체육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자.
- 5.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제22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수혜금액) 수혜금액은 장학재원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장학금지급 중지) 장학금 수혜 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단, 현 국가대표는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휴학을 한 자
- 3. 수혜정지 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자
- 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제25조(신청절차 및 결정) ①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소속부 지도교수의 확인 또는 추천을 받아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장학금신청서를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장 학생단체 및 학생지도

제26조(단체의 목적) 학생회 운영상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단체(동아리)를 두어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상호 친목과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의 규모) 신규 단체의 규모는 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목적이 동일할 경우 통합 등을 통하여 동아리의 난립을 예방하며 건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제28조(단체조직 및 승인) ①학생회 산하단체(동아리)를 조직할 때에는 새 학년도 시작후 30일 이내에 단체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1학년은 1학기 홍보후 1학년 2학기에 등록한다.

- 1. 단체승인 신청서 1부
-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 3. 서약서 1부
- 4. 회원명단 1부
- 5. 단체회칙 1부
- 6.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제29조(집회·행사허가원 제출 절차) ①집회·행사허가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3일 이전에 학생과로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의 집회 및 행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집회 및 행사에는 지도교수 가 반드시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비승인 단체의 구성 및 승인 단체의 활동금지) ①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의 구성은 이를 금지한다.

②승인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총장은 그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자는 학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학생단체의 회칙 개정 등의 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개정되거나 임원이 개선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사항) 위 이외의 동아리활동의 승인 및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2조의2 <삭제>

제6장 학생증 발급

제33조(학생증의 발급) ①학생증은 학년초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발급한다.

②학생증을 분실 또는 오손 하였을 경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에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발급권자)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35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36조(무효 및 회수)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 2. 당해 학생이 졸업,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되었을 때
- 3. 기재 첨부 날인사항을 임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오손 하였을 때제37조(반환) 학생이 졸업, 휴학, 제적 등 학생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학생증을 학생과에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증의 소지)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제39조(장부 비치) 학생증 발급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3. 8. 제39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 한국체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2001. 9. 1. 제339호)에 의거 시행한 학생 상·벌(포상·징계), 장학,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 학생증발급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12. 제3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1.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3. 5. 제525호)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상대상자 추천서

학부(과)	전공(종목)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연락처	_	-	
〈추천요지〉				

상기 학생을 (

)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경기력상 대상자 추천서

부 명	부 추천순위	성 명 (학번)	경기실적	비고

상기 학생은 본교 재학중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경기력이 우수 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경기력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지도교수	(인)
		지도교수	(인)
		훈련과장	(인)

※ 추천요령

- 1. 각 부에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수 입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 추천 순위로 선정합니다.
- 2. 유도, 하키, 핸드볼은 남, 여 구분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